###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54 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송기헌·백혜련·김남국

김용민 · 김종민 · 박범계

박주민 · 소병철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6863호, 2020. 1. 14. 공포, 2020. 7. 15. 시행)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가목).

법률 제 호

#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"중앙행정기관"을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중앙행정기관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	1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	
관·단체를 말한다.	
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	가
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	
국가인권위원회, 중앙행정	고위공
<u>기관</u> (대통령 소속 기관과	직자범죄수사처, 중앙행정
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	기관
함한다)과 그 소속 기관	
및 지방자치단체	
나. ~ 마. (생 략)	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